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란?



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실장)

현재 한국농업은 수입개방의 거센 파도에 휩싸여 그 해결방법이 결코 쉽지 않은 위기에 봉착하여 있는 느낌이다.

작년 10월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한 국제수지 흑자로 가트(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부터 국제수지보호를 이유로 한 상품수입제한의 근거조항인 18조B항으로부터 졸업하게 되었으며, 269개 품목의 농수산물을 1997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입개방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작년 4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개방압력과 한미통상마찰로 243개 농수산물을 1989~91년에 걸쳐 수입개방 예시한 것에 이은 연속적인 수입개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년말로 협상타결의 시한을 정해놓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우리의 의사와는 다르게 농산물 무역을 대폭적으로 자유화 시키는 방향으로 타결될 전망이어서 그 야말로 수입개방압력은 동시 다발적이고 가속적으로 밀어 닦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의 배경은 미국의 경제사정 악화와 누증되는 무역수지 적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980년초부터의 과다한 국방비 지출과 조세감면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와 수입증대로 무역수지상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소위 쌍둥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제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은 자국에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라 만성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를 임의로 선정하여 그들이 비교우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농산물, 서비스의 수입개방과 지적소유권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가트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서도 수입개방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란 가트회원국간의 8번째의 무역협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1947년 발족된 가트에서는 새로운 무역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특정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 왔는데, 매번의 협

상을 라운드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의 우루과이라운드는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 문제와 새롭게 대두된 무역문제인 농산물, 서비스, 그리고 지적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2,000년대의 세계교역질서를 규범하게 될 가트 규정의 제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1980년대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세계적인 과잉 생산, 재고누증, 누증되는 재고의 처리를 위한 수출보조금의 경쟁적인 지급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재정압박 증대는 물론, 세계 농산물 교역 질서는 극도로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트회원국들의 각료들은 1986년 가을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금번의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었고, 1987년 1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를 금년말로 협상을 종결시킨다는 계획하에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에는 농산물을 포함하여 관세, 비관세, 농산물, 천연자원산품, 열대산품,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15개 협상분야가 설치되었는데, 이중에서도 농산물은 그것이 갖는 각국의 국내적인 정치, 사회적·민감성과 산업의 특수성으로 매우 협상이 어려우면서도 타협상분야의 성공적인 타결의 전제조건이 될만큼 중요한 협상분야이기도 하다.

농산물 협상은 그동안 23차례의 공식회의와 수차례에 걸친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에 관한 작업단회의, 그리고 수출입국간의 비공식회의를 가져왔다. 지난 1988년 12월에는 상반기 2년간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협상의 협상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중간평가회의가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었다. 그러나 국내 농업보조금과 국경보호조치의 완전철폐를 주장하는 미국과 점진적인 감축을 주장하는 EC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합의문 작성에는 실패했던 것이다. 몬트리올에서

의 중간평가 실패이후 의장의 다각적인 중재역할에 힘입어 1989년 4월 농산물협상그룹의 협상목표와 이해방법 등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협상목표는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계에 두고, 이를 위한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가트규범의 제정과 농업보호 및 지지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감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협상원칙과 목표하에 1989년 4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2개국이 각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국내농업보조금감축, 국경조치완화, 수출경쟁질서의 개선,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제도의 개선,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그리고 개도국 우대조치 등에 관한 것이다.

국내보조금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으로서는 생산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품목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여 합의된 기간내에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가격과 생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농업 및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서비스 지원정책은 허용대상으로 하되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국경보호조치중 관세는 점차 인하하여 양허폭을 확대할 것이며, 모든 비관세 조치는 철폐하되 종전의 비관세조치로 수입제한되는 효과만큼을 달성할 수 있는 관세의 부과를 허용하되(소위 관세화) 그와 같은 관세(관세 상당액이라고 부름)는 점차 인하해 나가자는 것이다.

수출경쟁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농산물수출국들이 경쟁적으로 지급하여 온 수출보조금을 국내보조감축, 국경조치완화에 우선하여 감축내지 철폐하자는 주장들이다. 그리고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에 관한 기준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기준에 합치시켜 나감으로써 검역제도가

인위적으로 농산물수입을 제한하는 장치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서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농산물수입제한의 근거로서 내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식량안보, 환경보존, 고용수준 유지, 국토의 균형발전 등 경제적 기능 이외에 수없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농산물교역의 완전자유화는 불가능하며, 최소농업은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마지막 논의사항으로는 개도국 우대조치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측면에서의 개도국에서는 수입자유화를 하되,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이 충분히 허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는 달리 우대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3년반동안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초에는 보조금 감축과 이행방법 등 협상의 뼈대가 될 수 있는 합의문을 의장의 재량하에 작성하였다. 그러나 의장초안에서는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호주, 카나다 등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반면, 농산물수입국들의 주장은 미흡하게만 포함되어 있다. 이에따라 의장초안을 협상원칙으로 채택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짓는 각료급회의가 역시 지난 7월말에 열렸는데, 각국들이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여 합의가 안된 상태이다. 하지만 농산물협상의 기본목표였던 농산물보조금의 현상유지내지 감축과,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윤곽이 잡혀가고 있으며, 다만 미국과 EC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출보조금 감축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농산물협상은 타결될 전망이다.

만약 의장초안이 큰 수정없이 채택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농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추하곡수매제도를 비롯하여 가

격안정대사업, 장단기 저리 영농자금의 지원, 농약·농기계·비료 등 농업투자재에 대한 보조, 차액보상 등이 감축대상에 묶여지고, 국내보조정책 중 일부만 연구지도사업, 교육훈련지원, 재해보상, 환경보존 등에 관한 지원은 허용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국내농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전무해지는 느낌이다. 또한 국내외 가격차가 몇배씩 차이가 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국경조치, 특히 비관세조치를 철폐할 경우 농가의 수익성은 극도로 악화되어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농정방향은 대폭적인 수정 내지 개혁이 타의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정책방향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농산물협상에서 농업보조금을 현상동결내지 감축하자는 주장이므로 허용된 보조금총액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액으로도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있으며, 수익성이 있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전략품목으로의 작목체계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전략작목은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거나 신장하는 품목으로서 생산성 증대가 쉽게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알맞는 품목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산물수출증대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는 수입개방폭의 확대와 작목선택의 폭 축소에 따른 과잉생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농산물을 수출하므로 우리 농업도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번의 농산물협상으로 우리나라만 농업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우와 품목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

을 수 있다. 가령 돼지고기 생산의 경우 일본, 대만, 덴마크, 한국 모두 국내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조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장초안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지급은 가급적 지양하고 농민, 농촌보조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피해는 복지정책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의장초안이 미합의 상태에 있으나 금년말까지의 협상타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0월 1일까지 각국의 국내보조금과 국경조치의 현황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10월 15일까지는 각국이 보조금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해가 되는 당사국들끼리의 쌍무협상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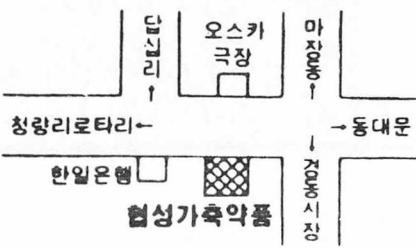
실질적인 감축폭과 이행방법들이 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수세적인 입장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게 특정품목, 특정정책에 대한 감축과 수입자유화 요구를 상대국에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수출시장인 일본, 미국 등에 관한 수입제도와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하여 정식으로 거론하여 시정사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므로 일면 다행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를 농업에 대한 자각없이 허송세월로 보낸다면 반만년에 이어온 한국농업을 자취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중지를 모을 때인듯 싶다. ■

동물약품 도매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3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축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등 일체총판
주야 전화상담 환영 (질병문의 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주문 환영 (신속하고 정확한 우송)



협성가축약품
* 동물약품 도매전문 *

〒 131 서울·동대문구 세기1동 654
(오스카극장 앞)

본사 967-8779, 964-4870
청량리영업소 965-9778